

1. 개정이유

정부조직법의 개정(2020. 8. 11., 법률 제17472호)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"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"에서 "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"으로 변경함(제명).

나. 질병관리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제1조, 제3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 1호,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“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”을 각각 “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

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각각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질병관리청장

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,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,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“보건복지부”를 각각 “보건복지부·질병관리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중 질병관리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법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</u>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민법」 에 따라 <u>보건복지부장관</u>이 주무 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설립허가의 신청)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 를 받으려는 자(이하 “설립발기 인“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 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(전 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하 다)를 첨부하여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(이하 “주무관청“이라 한다)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 략)	<u>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</u> 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 병관리청장</u>----- ----- -----. 제3조(설립허가의 신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</u>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2 - 2272 (044) 202 - 2278